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09.04.21 (화) 10:30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권광택 의원 외 6인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9년 4월 15일

나. 회부일자 : 2009년 4월 16일

3. 제안 이유

- 친환경 농업이 확대됨에 따라 작물재배를 위한 토양·수질, 잔류농약과 농산식품 분석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험과 분석에 소요되는 기간과 분석결과 통지기한을 명시하고, 운영상 제기된 일부사항을 보완하려는 것 임.

4. 주요내용

- 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문구의 수정과 행정주체 등을 규정(안 제1조 ~ 안 제3조, 안 제5조 ~ 안 제6조)
- 나. 분석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통보기간을 명시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 증진 규정 마련(안 제8조)

다. 시험실시 전 시험 의뢰 철회로 시험 미 실시시 경비 반환 규정 마련(안 제11조)

5. 검토의견

-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 농업이 확대됨에 따라 작물재배를 위한 토양·수질, 잔류농약과 농산식품 분석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험과 분석에 소요되는 기간과 분석결과 통지기한을 명시한 것으로써, 운영상 제기된 일부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

- 다만, 개정되는 조례안의 시행과 운영상에 관한 문제점은 없는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